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기준 농검에서 공표, 포장제조자도 표시해야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는 98.1.13일 품질 51160-32호로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8조 및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고시등과 관련하여 농산물 표준규격품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포장재 표시사항이 복잡하고 농촌 인력부족 등으로 표시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다음과 같이 표준규격품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표준규격 출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산물포장 골판지상자에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과 관련한 정부지원 포장재 제조시, 포장재 제조회사명·전화번호 및 『이 포장재는 정부지원 포장재임』이라는 표시를 하여 포장재 실명화 정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동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농산물 표준출하규격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므로써 농업인의 편의도모 및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토록 함.

2. 대상 농산물

- 농수산물가공사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동 시행령 제28조(표준출하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준규격품』이라 표시하여 출하하는 곡류 (쌀, 찹쌀, 현미, 보리쌀 제외), 과실류, 채소류, 특작류 및 서류로 한다.
- 쌀, 찹쌀, 현미, 보리쌀은 『곡류 표준출하규격 표시기준, 농검고시 제1995-3호(95.4.1)』에 의함

3. 표시사항

구 분	표 시 사 항
필수표시	품목, 산지, 품종, 생산년도,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임의표시	크기구분, 당도, 맛, 반품 및 교환안내, 자율검사 필인 등
표시금지	무공해, 저공해, 최고급, 고급, 최상, 바이오, 청정등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기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사항은 표시할 수 없음.

* 필수 표시사항(7개항) 중 과실류, 채소류, 특작류등 특성에 따라 주요 3-4개 사항은 일관 표시토록 하고, 잔여 필수 표시사항은 임의 위치에 별도 표시토록 함.

기타 표시 : KS규격 포장재의 실연거리를 위하여 포장재에 포장재 제조회사명·전화번호 및 「이 포장재는 출하자원 포장재임」이라는 표시를 임의위치에 표시도록 함

제 5 조 표시

- 산지 : 재배지역, 시·군명을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음·면명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품종 : 등록된 공식명칭을 표시한다. 등록된 공식명칭이 없는 도입 신품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고 재래종 및 희귀품종등은 산지나 소비지에서 통용되는 관행 명칭을 표시
- 생산년도 : 수확한 연도를 표시
- 무게 : 실중량을 표시

제 6 조 표시방법

가. 포장재별 표시

- 골판지상자, 지대 :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고무인 표시 또는 스티커 부착도 가능
- P·E대 포장 :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 P·P대 포장 : 인쇄 또는 고무인 표시

나. 필수 표시사항의 표시

- 필수 표시사항 중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주요 3~4개 사항을 한표에 모아 일괄 표시 <별지 양식 참조>
- 일괄 표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필수 표시사항은 소비자등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되, 중복표시를 지양
- 특정한 품종명이 없는 품목은 품종명 표시 생략

다. 임의 표시사항의 표시

- 임의 위치에 자율적으로 표시
- 필수 표시사항 중 임의위치 표시사항인 산지표시의 경우 문자크기는『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 요령, 농림부 고시 제97-79호('98.1.5)』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

제 7 조 표시방법

- 골판지 상자 : 상자 측면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날개에 표시가능 P·E대, P·P대, 지대 : 포장재 전면 또는 이면

* 일괄 표시사항 이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포장재 임의 위치에 표시(중복표시 지양)

제 8 조 표시방법

- 동 표준규격품 표시기준이 정한 이외의 곡류, 화훼류 등에 대하여는 농산물표준출하규격 고시(농검), 곡류 표준 출하규격 표시기준 고시(농검) 및 농산물원산지 표시 업무처리 요령(농림부 고시)등 관련규정에 의한다.
- 표준규격품 표시기준 시행전에 제조·사용중인 포장재는 소진시까지 사용가능하며, 신규 제조사는 동 기준을 적용함.

〈별지〉

■ 농산물 종류별 일괄표시 양식 (예시)

가. 양식

◎ 과실류·과채류

〈상자높이가 높은 경우〉

표준	품종	등급	
규격품	무게(개수)	kg()개	
표시란	생산자	(Tel:)	

〈상자높이가 낮은 경우〉

표준	품종	등급	무게(개수)	생산자
규격품				
표시란			kg()개	(Tel:)

※ 품목의 특성에 따라 무게와 개수를 별행표시 또는 택일

◎ 과실류·과채류

표준	품종	등급		kg
규격품				
표시란	생산자	(Tel:)		

표준	등급	무게	생산자
규격품			
표시란		kg	(Tel:)

◎ 특작류·서류·곡류(쌀, 찹쌀, 현미, 보리쌀, 제외)

표준	품종	등급	무게	kg
규격품				
표시란	생산자	(Tel:)		

표준	품종	등급	무게	생산자
규격품				
표시란			kg	(Tel:)

※ 특정한 품종명이 없는 품목일 경우 품종란 삭제 가능

나. 양식 표기방법

표준규격품 표시란에는 『표준규격품』이란 문자 또는 표준규격품 마크를 인쇄(스티커 부착가능)하되, 크기는 포장재 표시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품목의 특성, 포장재 종류, 크기 및 높낮이에 따라 양식을 변형할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을 감축하여 임의위치 표시사항으로 전환가능.

문자의 크기는 임의로 할 수 있음.

생산자란에는 생산자 성명 또는 생산자단체명과 전화번호를 표시.

- 전화번호가 임의위치에 표시될 경우에는 중복표시방지를 위하여 일괄표시란의 표시는 생략